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0. 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추가
 - 당 초 :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설
 - 변 경 :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설
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신설(추가)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호 바목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에 “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” 신설 외에 “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“를 추가 신설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하</u> <u>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하</u> <u>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금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.	2. ----- ----- -----.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마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</u>	<u>마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</u>

	<u>또는 신용협동 조합중앙회</u>	<u>또는 신용협동 조합중앙회</u>
		바. <u>「산림조합법」</u> 에 <u>따른 산림조합</u> <u>또는 산림조합</u> <u>중앙회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특례보증 지원 대상) ① (생 략)	제5조(특례보증 지원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	제5조(특례보증 지원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<u>충족하여야</u> 한 다. 다만, 청년창업 자와 착한가격업소 로 지정된 소상공인 은 제3호의 신용등 급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갖춰야</u> ----- . --- ----- ----- ----- ----- .	② ----- ----- ----- <u>갖춰야</u> ----- . --- ----- ----- ----- ----- .
1. <u>대표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</u>	<u><삭 제></u>	<u><삭 제>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특례보증 지원	제6조(특례보증 지원	제6조(특례보증 지원

내용) ① (생략)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<u>아니한</u>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u><신설></u>	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9조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) 시장</u> <u>은 소상공인 육성</u> <u>및 지역경제 활성화</u> <u>를 위하여 소상공인</u> <u>연합회 등 관련 단</u> <u>체가 수행하는 사업</u> <u>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제10조 (현행 제9조와</u> <u>같음)</u>	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9조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) 시장</u> <u>은 소상공인 육성</u> <u>및 지역경제 활성화</u> <u>를 위하여 소상공인</u> <u>연합회 등 관련 단</u> <u>체가 수행하는 사업</u> <u>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제10조 (현행 제9조와</u> <u>같음)</u>
---	---	---